

사폐소위 세미나

<언론과 영화에 비춰진 범죄>

◎ 일시: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발 표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영화에 비춰진 사형제도
(금태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토 론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이재성 (한겨레신문)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사법소위 위원)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1. 미디어 범죄 보도의 일반적 경향

- 미디어의 범죄보도는 공중들이 범죄 이슈에 몰입하게 만들고 해당 범죄 이슈를 미디어가 가공생산한 방식대로 수용하게 만들며,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나 피의자, 피고인을 그 범죄의 확정된 범인으로 미리 낙인찍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미디어의 범죄보도는 범죄를 예방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며, 미디어가 보도한 범죄 양상과 유사한 범죄의 모방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고 미확인의 사실을 성급하게 보도함으로써, 나아가 범죄의 내용과 범죄혐의자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 연루자들의 인적사항을 무분별하게 다룸으로써 가해자나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히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승선, 김연식, 2008, 67쪽)

- 언론의 보도는 현실 그 자체(window)가 아니라 일정하게 가공된(frame)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디어가 생산한 이미지는 수용자의 현실을 구성한다. 인신매매의 공포가 흉흉하던 1980년 대 후반의 한국사회를 회고해볼 필요가 있다. 흉악범이라는 과도한 상징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가 지켜야 할 다른 가치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피의자는 범죄자인가? 설사 본인의 자백과 확실한 물증이 있더라도 피의자는 재판 종료 이전에 피의자일 뿐이다. 과거 무죄로 번복된 사례를 들어 이 주장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디어의 보도는 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용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피의자 이름만으로 관련보도가 나올 뿐이다.

- 피의자와 관련된 인물의 인적 사항이나 관련자를 추측하게 하는 정보의 제공이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특히 최근 '신상털기'와 같은 인터넷 현상은 단순 정의감 이전에 국민적 호기심 충족이라는 욕구와 결부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 한국의 범죄 보도는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범죄는 사회적 현상이며, 범죄 발생의 원인과 범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범죄 혐의에 집중하는 보도는 단순 정보 제공일 뿐이며 범죄 행위에 올바른 사회적 대처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심층 보도라는 이름으로 ‘폭로식’ 범죄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

- 이런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관련 보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소위 흉악범에 대한 사회 여론을 배경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일종의 여론 재판(마녀 재판)과 같은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제재(린치?)는 이런 경향을 일반 범죄에도 확산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2.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찬반 논리

- 국회는 2010. 3. 3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0년 4월 23일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고,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¹⁾

- 이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흉악사범에 대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공공의 이익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얼굴등 신상공개는 이전에 지켜온 원칙과 어긋난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훈령을 정해 이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여중생납

1) 비록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대한 인권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인권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막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 공개할 수 기준을 제시한다는 자세가 옳지 않을까?

치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 판결 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이무선, 2010, 224~225쪽)

- 법무부에서는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에게도 사생활권은 있지만 이는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며 국민의 알권리 같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공익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번 개정법(안)대로라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의 경우 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언론공개라는 사실상의 처벌을 하게 된다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호기심과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이무선, 2010, 226쪽)

- 특정강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수사공보준칙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제1항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의 구역에서 소환, 체포, 구속(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을 포함한다) 또는 귀가과정에 한하여 제22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또는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첫째, 피의자의 인권 못지

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범에까지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공권력의 입증책임을 강조한 것이지 혐의가 명백한 흉악범을 일반 시민과 같이 취급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셋째, 범인 신상공개를 금지한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등도 신상공개에 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얼굴을 공개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범인 신상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징벌적 효과가 있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다섯째, 피의자의 기본권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 여섯째, 국민여론상 신상공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인정된다. (조동시, 2009, 54-57)

- 또 다른 논리로 1) 추가피해가 더 있을 경우 얼굴 공개를 통해 범죄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범인의 행적에 관한 증거 및 증언이 추가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2)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3)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며, 이것이 인권선진국의 추세다. 4)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 5) 대중의 관심이 쏠린 범죄자는 공인(public figure)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통 사람이 누리고 있는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을 수 없다. 6) 공인인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비교해서도 불공정하고 경찰이 지명수배자들의 얼굴 사진을 전국 곳곳에 붙여 놓는 것보다 모순된다. 7) 초상권은 당시 개인의 권리이지 가족의 권리는 아니며 가족이 범죄에 희생당한 범죄에 희생당한 범죄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강동욱, 2009, 7 쪽)

- 반론을 보면 첫째,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초상권 등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며 민형사상의 실체법에 대한 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형벌의 목적은 물론 형사절차상의 실체적 진실주의 요청에서 보더라도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셋째, 신상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 물론 범죄인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의 공개가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라면 범죄인의 사생활보호 내지 인격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만으로 구체적인 위협의 방지 등과 무관

한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장영수, 2009, 52쪽).

- 지금 강호순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 혐의가 명백한 피의자라는 표현은 형용 모순.

- 대중의 관심이 쏠린 대상은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대중의 호기심 충족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아닌가?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 관점에는 오류가 있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지만 사적 비즈니스를 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공인은 그 행위 자체가 공공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부여 받은 인물로 보아야 한다. 연예인은 대중의 선택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강력범죄자의 존재 가능성은 대중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체포 구속된) 대중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시기부터 대중의 관심은 호기심 또는 정서적 카타르시스의 대상이 아닐까?

- 알 권리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개인권인 동시에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고 정치과정에서의 참가를 위하여 불가결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또 알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알권리는 (ㄱ) 민주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집권을 의미한다. 알 권리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언론의 상업적 이해는 알 권리를 수용자에게 소구력이 있는 자극적 정보 제공의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다.

3. 피의자 신상공개를 원하는 언론

- 강력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은 자연발생적이지만 해당 사회의 강력범죄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은 조성되는 것이며, 대중의 불안은 언론으로 보면 좋은 상품일 수 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에는 언론의 추동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강호순의 사진을 지면에 게재하였고, 2월 2일에는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에서 게재하였다. 한편 방송도 2009년 1월 31일 SBS는 저녁 8시 뉴스, KBS는 '뉴스9'에서 MBC는 2월 1일 '뉴스데스크'에서 강호순의 얼굴사진을 공개하였다. 조선일보는 또 범죄사건보도에 있어서 흉악범의 얼굴공개와 관한 내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i) 살인, 강도, 납치, 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때에는 내부 논의를 거친다.

(ii)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과 같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

(iii) 신상 보호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공개함.

(iv) 이때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는 견제가 필요함.

(v) 흉악범의 얼굴 공개시 목격자 추가 확보와 경각심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공개함.

(vi) 2명 이상이 희생된 연쇄살인, 어린이 납치 유괴 살해,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 다중 살인 등의 범죄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것.

(vii) 중대 사건에 대한 강력한 물증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공개할 것.

(viii) 현행범이나 확신범 증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

○ 나주 성범죄 사건(2012년 9월)

- 나주 성범죄 사건에 관한 방송3사의 보도를 살펴보면 ‘예방’, ‘제도·문화적 개선’보다는 사건 전개 과정, 피의자의 ‘잔혹성’, 피의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치중된 자극적인 보도가 많았다. 흉악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정리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 범죄 대상이 되는 ‘성폭력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뒤따르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킨 셈이다.

- KBS와 MBC는 사건전개 과정을 반복 설명하거나,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설명을 덧붙인 보도가 많았다. 1일 나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를 전했는데,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 강해진다’, ‘아동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동 성도착증’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는 등 자극적인 설명을 달았다. 또 이전 아동성범죄자들이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고 강조해 범죄의 원인을 특수한 몇몇의 왜곡된 성인식에 한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고 씨에 대해 ‘외톨이형 성범죄자’라고 분석하면서도, 사회적 ‘소외’보다는 개인의 방탕함을 부각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 방송3사는 나주사건 외에도 동대문구, 인천, 동두천, 천안, 춘천 등 각지의 성범죄 사건을 묶어 전달하면서 “면식범, 성추행 전과범” 등 공통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결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건을 나열한 데 그쳐 ‘공포심’만 부각했

다.

- 자극적인 질문(KBS): 고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증이 끝날 무렵엔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기자멘트로 덧붙였다. <아동 대상 왜곡된 욕망>은 불필요한 질문과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고 씨가 “아동음란물 보며 뒤틀린 욕망 키워왔다”면서, 연행되는 고 씨에게 기자가 “몇 번이나 보셨어요?”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보도는 경찰의 설명을 전달하면서도 “아동 포르노를 보며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뒤틀린 환상을 키워왔고”,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강하게 느낌”, “피해자의 마음속에는 큰 딸이 그려져 있었다”는 등 경찰 관계자의 자극적인 멘트를 그대로 전달했다. 보도 말미 피해 어린이 상황을 전하면서 “나영이 처럼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라는 불필요한 설명을 달았다.

- 자극적인 묘사(MBC): <“아동 음란물 보며 성충동”>은 제목부터 보도내용까지 고 씨가 “아동 음란물에 심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멘트와 경찰 발표에서 “일본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3차례 반복하거나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원했다”고 반복해서 전했다. 뒤이은 <술 마셨지만·계획적 범행>에서는 “평소 아동음란물을 즐겼던 고종석은 순간 큰 딸을 떠올리며 성폭행 계획을 세웠다”며 고 씨의 범행 계획부터 사건 전개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동 성도착증은 정신병>은 “병적 성도착증”, “병적인 욕망을 토로했다”, “조절이 안된다”는 등 과도한 부연설명을 달았다.

- 조선일보의 오보: 2012년 9월 1일 <조선일보>가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사진이라며 1면 톱으로 실은 사진이 사실은 ‘무고한 시민’의 사진이었다. 조선일보는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는 헤드라인 아래 ‘범인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한 남성이 술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실었다.

4. 무분별한 범죄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

- 부천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이 10일째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는 소식이 처음 보도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23일 간의 범죄보도 기사 140건을 분석했다(김춘식, 2004, 164쪽) 범인이 어떤 범죄 수법을 사용했는지, 살해된 피해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한 내용을 포함한 기사도 전체의 45%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모습이나 경찰의 수사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22.9%)

- 사회범죄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사건 현장 및 피해자, 그리고 범행 수법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묘사이다. ‘옷이 벗겨진 채 양손 손가락

이 지름 4~5cm 나무에 자신이 신고있던 운동화 끈으로 묶여’(한국일보 1월 31일), ‘교복과 속옷이 벗겨진 채 손톱과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까지 발라져’(서울신문 2월 10일 사설), ‘알몸의 시신은 가슴 부분과 얼굴의 살점이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된 듯’(문화일보 2월 10일),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5리 (국가지방지원도 98호선 인근) 축석낙시터 맞은편 웅달샘가든 입구 우측 배수로의 길이 7.6m, 지름 60cm의 콘크리트 배수관 안에서 웅크린 모습으로’(경향신문 2월 9일·동아일보 2월 9일) 등의 기사가 대표적이다.(김춘식, 2004, 165쪽)

- 모든 신문이 구체적인 사례(concrete instance)나 특수한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발생한 범죄 사건에만 주로 관심을 두고 범죄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이슈중심적 보도(thematic frame)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참고문헌>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연구』, 20권 2호, 2009 여름, 5-28쪽
- 김춘식, 매체비평 신문평 - 범행수법 자극적으로 묘사, 특정계층 ‘인격 살인’도, 『신문과 방송』, 2004년 3월호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39집, 2010
- 이승선, 김연식, 범죄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 장영수,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신문과 방송』, 2009. 3
- 조동시, 알 권리 VS 인권보호: 언론의 범죄피의자얼굴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신문과 방송』, 2009. 3

영화에 비춰진 사형제도

금태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1. 사형제도에 대하여

왜 사람을 처벌하는가?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을 징역을 살린다고 해서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 전체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벌을 받는다.’ ‘정의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들 한다.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형벌 중에서도 사형은 그러한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사회 전체에 크나큰 충격을 주며 공개 처형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존치론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형존치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극악한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가정파괴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이를 유괴하여 살해하는 아동살해범, 뚜렷한 동기도 없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연쇄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의 등장은 사형폐지론의 입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사형수들은 외부와 접촉을 피한다. 사형폐지론자들도 조심스러워진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다수는 사형제도를 지지한다. 몇 년 전 있었던 흉악범 얼굴 공개를 둘러싼 설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잔인하게 살해한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하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형제도가 올바른 해결일까?

흉악범에 대한 특별 취급이, 그리고 사형의 집행이 과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충격 요법을 통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의 분석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사형제도 자체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을까. 오판은 과연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공정하고 능력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기억에 따라 정직하게 증언하는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오판을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는 어떻게 나타날까. 과연 우리는 무고한 사람을 절대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사형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형존치론자들은 오판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형폐지론자들의 지적에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만 집행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과연 어느 정도 확실한 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 증거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절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까. 둘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악한 행위와 그에는 미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선을 긋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2. 영화에 비춰진 사형제도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관점에 대한 근거와 함께 비판이 가능한 지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아래에 제시된 영화들은 그 중 자주 논의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① 억울한 사람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 및 교정의 어려움 - 그린마일, 썬 블루 라인, 웨스트 오브 멤피스, 데이비드 게일 등

② 유죄가 확실한 사형수에 대한 동정적 관점 혹은 교화 후의 집행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데드 맨 워킹, 집행자 등

③ 유죄가 확실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불분명한 경우 - 카포티

3.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영화에서 사형제도를 다룰 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중심 소재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오판의 가능성, 사형수의 선함(혹은 악함) 등 일반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에 파고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존치론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많은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오판의 가능성과 함께, 사형에 처할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설득력있는 대답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 영화에 비춰지는 사형제도는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토론1]

안전담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아래 내용은 2012년 인권활동가들의 워크샵에서 '안전담론'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배경

- 흉악한 아동성폭력범죄; “강력한 응징”; 형벌정책의 강성화 경향; 2007년부터 본격화
- 왜곡된 범죄 이미지의 재생산; 타인에 대한 불안과 공포, 배제; ‘피해자보호’의 왜곡된 이용; 선과 악의 이분법
- 사회적 위험의 관리도구로서 법질서정책, 무관용주의; 저항적 표현에 대한 위험통제정책의 강화; 저항적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통제의 맥락이 변했다
- 형벌정책이나 제도 하나하나에 대한 단편적 대응으로 한계와 피로를 느낀 인권운동
- 이데올로기가 아닌 구체적인 호소력을 갖는 대응이 필요하다.

2. 안전담론의 문제점

1) 이분법에 고착

- 선과 악의 이분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 원래부터 피해자가 될 사람, 가해자가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 우리 공통의 문제다. 특정인을 특정 위치로 몰아넣는 조건을 바꾸는 문제는 무시되고, ‘지못미’나 ‘때려잡자’의 대응만이 넘쳐난다.
- ‘왜 구조적으로 누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묻지 않는다. 취약한자, 보호해야할 자를 가려낸다. 따라서 보호를 명분으로 소외를 더 심화시킨

다.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즉 순수하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면 안된다.

2)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의 폭력의 비가시화

보통의 점잖은 사람에 의한 혐오범죄는 상대적으로 무시된다. 같은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쉽사리 가해자로 배제해낼 수 없다.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의 폭력은 비가시화된다. 사회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너무 힘이 드니까 쉽사리 사회적 소수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개인적 혐오를 하는 것이 속편한 해결책이다.

3) 자유와 안전을 동일시한다.

공권력의 존재 이유로서 치안 유지를 최우선의 문제로 취급하고 법의 지배를 초월한 권한을 치안 권력에 부여하는 경향. 국가폭력 강화의 명분인 안전담론이 시민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탈바꿈한다.

4) 국가안보가 사회의 안전으로 바뀌었다.

북한으로부터 (가난한) 범죄자들과 일탈행위자들로 표적이 바뀌었다.

5) 수동성의 강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목적, 아무것도 하는 수동성을 강요한다.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공간을 욕망하게 만든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명목으로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6) 안전의 사유화, 공공적 대응의 위축

원인도 해결방식도 개인으로 귀결시킨다. 문제되는 '개인'만 있고 문제 '사회'는 숨는다. 안전사회는 감시사회이자 단속사회다. 따라서 안전산업과 공모한다. 동료성을 상실하고 연대와 민주주의는 질식된다. 이익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것도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희석화된다. 낙인효과와 무력화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3. 풀리지 않은 쟁점

1) 진보는 ‘안전’을 언어로 택할 수 있는가? 안전에 대한 인권을 강조해야 할까? vs 안전담론에 대한 반대도 결국 안전에 갇히는 것 아닌가? 안전이 인권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안전 ‘밖’으로 나와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전제; 안전 욕구는 인간에게 당연한 것.

- 혼돈스런 대응; ‘안전이 아니라 인권이다 vs 안전은 중요한 권리이다’ 식으로 사용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한다.

- 전자(안전이 아니라 인권이다)의 경우: 안전담론은 배제의 언어다. 안전을 근거로 권리를 위계화한다. 역설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아니라 ‘위험할 권리’ 즉, 정치적 생명으로서 도전하고 실수할 권리, 자기 삶을 스스로 감당할 권리의 주장이 요구되지 않는가?

- 후자(안전은 중요한 권리이다)의 경우: 탈핵,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도시농업, 협동조합, 혁신학교, 체벌 금지,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재정 확충과 안정을 위한 부자증세, 한미FTA, 4대강공사,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문제 같은 ‘불안’한 현상들을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진보적 내지 전환적으로 ‘안전’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근본적 문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강성차별정책이 정태적 인간형을 가정하고 있다면 인권운동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형도 마찬가지로 정태적 아닌가? 이성적이고 말 통하고 변화가능성을 가진 인간, 전형적인 이미지의 인간형; 설명 불가능한 악, 해결의 불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설득불가능성 속에서도 인간 존엄성 존중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래왔나? 선량화, 피해자화로 회피해오지 않았나?

4. 제안된 대응방식

1) 자력화: 적극적 자기방어훈련; 시민의 책임성; 다수자로서의 감각 깨기; 결국 당사자들의 행동과 말하기에 의해 깨야 한다. 그럼 누가 당사자인가? 연루됐다는 의식을 가지는 모두이다. 특정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 공통의 문제다. 내가 연루되었다.

2) 이분법(보호/보호주의, 치안/보안, 피해자/가해자 등)을 극복하자. 안전도 관계의 문제다.

3) 말할 능력이 억압돼온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듣는' 능력을 재고하자.

4) 모르면 두려운 거다. 낙인을 재생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가해자/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

5) 적극적인 구체적 권리의 언어를 만들자. 금지된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압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들의 권리를 얘기해야 한다. 수동적인 안전에서 능동적인 안전으로; 자유를 위한 행동의 언어 만들기(예: 안전할 자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한다)

6) 빈곤이나 젠더 문제가 안전으로 덮어씌워지지 않도록 사회정의, 젠더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어법 만들기. 너무 명목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체적 상황에 접목시켜서.

7) 효과성의 시선을 강성형사정책으로부터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은 체크리스트 정하기: 예) 아동폭행, 성추행 상황 등을 봤을 때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면 가해자에 대한 교육(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양식이 피해자의 회복과 자력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가?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장시키기...

8)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말이 공포를 전염시킨다. 범죄/성폭력 보도에 대한 인권 가이드라인 효력화 하기.

9) 정부 조치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대한 요구

검증 없이 무조건 할 수 없다. '쇼'에 대한 검증과 자료를 요구하기. 신고, 검거율, 실제처벌의 적정성 등 실상에 대한 파악을 요구하기.

언론에서 나타난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1. 들어가며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과 2차 피해를 생각지도 않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앞 다퉈 상세하게 보도한다. 이러한 보도는 매번 선정성의 도마 위에 올라 질타를 받지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 3개와 신문 1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 모니터링 기간 : 8월 31일(금)~9월 6일(목) (1주일간)

· 모니터링 대상

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 :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KBS1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2. 피해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묘사

성폭력 사건을 범행 내용과 피해 상황을 너무 상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루다 보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원치 않더라도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불 짜 들고 나와’,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알몸으로 발견’ 등 선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사건 내용 및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집과 가해자 집, 그리고 PC방과 성폭행 장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약도 또는 위성 지도를 실는가 하면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아이를 납치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 내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누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까지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그곳이 아무리 범죄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세한 보도의 문제점은 현장검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방송은 현장검증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신문은 이를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집안에서 납치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는 피해자 가족 특히 그 부모에게 사건을 깊이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또한 2차 피해이다.

뿐만 아니라 한 신문사는 피해자 일기장을 공개해 평소 피해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기장 같이 지극히 사적인 것을 본인 동의 없이 마구 공개한다는 것은 언론의 지나친 횡포이며 선정적인 보도의 극치이다. 이렇듯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이러한 ‘사생활 캐기’식 보도는 성폭행 사건을 사건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호기심과 동정심을 가지도록 한다.

한편 <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 <범인, 뭉클 짓 뒤 여아 태풍 속 방치하고 찜질방서 잠>과 같은 기사는 마치 한편의 소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성폭행 사건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전락시켜 사건을 범죄가 아닌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

3.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범죄 유발론

나주 아동 성폭행사건은 집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안에서 납치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부모’, 그 중에서 ‘게임에 미친 엄마’ 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엄마가 밤 늦게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잔 것’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심지어 주민들의 입을 빌어 피해자 엄마를 게임 중독자로 몰고 가면서 이 때문에 속상해서 아빠는 자주 술을 마셨다는 등 사건을 피해자 부모 탓으로 돌리는 기사를 아무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일어난 사건이고 전적으로 가해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특히 ‘엄마’와 ‘가정의 돌봄 부족 탓’으로 돌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성폭력을 ‘딸’과 ‘딸을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할 범죄로 다뤄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각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쏟아내게 만든다. 예를 들어 2008년 조두순 사건 후 경찰은 등하교 길에 학부모와 함께 근무하는 ‘어머니 경찰대 확대’를 대책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경찰이 학부모, 특히 엄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4.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이번 아동 성폭력 사건 보도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술 마시니 욕정이 생겨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이다. 이는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식되어 유난히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감형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변명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으로 부각시켜 보여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도는 성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그저 욕정을 참을 수 없어 저지른 범죄로, 성폭력을 통제 불가능한 성욕의 분출구이므로 남성이라면 저지른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인식시키고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²⁾

또한 언론은 ‘아동 음란물’을 성범죄의 원인으로 바라보며, 아동 성폭행 가해자를 아동 포르노를 즐겨보는 소아성애자 또는 성도착자로 간주하면서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가해자가 변태 성욕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힘없는 약자를 힘으로 제압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를 봤기 때문에 아동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공식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를 ‘괴물’, ‘정신병자’, ‘변태’, ‘소아성애자’ 등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녀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를 즐겨 봤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공식은 여전히 성폭력을 성욕의 범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르노를 보고 욕정에 못 이겨 저지른 ‘실수’ 정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삭제요청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문서에서 '욕정을 일으켜'등의 문구 삭제를 요청합니다! > 2007.

도로 성폭력을 희석화 시키는 문제를 발생한다. 또한 화학적 거세니 물리적 거세니 하는 ‘성욕 억제’에 맞춰진 실효성 없고 핀트가 어긋난 대책을 마치 좋은 대책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5. 범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모니터링 대상 매체 중 KBS <9시 뉴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든 매체에서 9월 1일에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상관없는 언론의 선정성과 상업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범인의 얼굴과 이름 및 성장 배경을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는 없다. 다만 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와 상업성으로 인해 공개된 것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도는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거리와 호기심 대상으로 보게 할 뿐이다.

이러한 범인의 신상공개 과열 경쟁은 심각한 오보를 불러오기도 했다. 범인과 비슷한 사람의 얼굴을 범인이라고 지목하여 1면 중앙에 사진을 올려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범인의 얼굴과 이름, 사는 동네와 자란 배경이 공개되면 그와 한동네 살았던 주민, 그와 이름이 같은 사람,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원치 않게 피해를 입게 된다. 언론은 정말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범인의 얼굴과 신상공개를 했다면 명확한 기준과 함께 왜 국민이 이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야 한다.

6. 나가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 카메라 감독 등 관련 종사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보도를 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특히 성폭력 보도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게이트키퍼를 맡고 있는 간부들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성범죄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하

는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를 줄이고 보다 본질적인 접근으로 성범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예방, 근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으로 불릴 만큼 정신적인 피해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성폭력을 대처하는 주변사람들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³⁾

• 폭력의 성애화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변명을 인용해 설명하거나 희화화,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루지 않는다.
2.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3.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잘못된 통념 재생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4.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함.)
5.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6. 폭력을 '딸'들과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7.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8.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9.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시키는 보도하지 않는다.
10.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 실효성 없는 대책을 부풀리기

3)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은 2006년 1월부터 6월에 경향, 서울,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6개 신문을 대상으로 한 보도 모니터링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 대책 보도에 있어 현행 법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지점들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11.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12.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 정치적 쟁점의 소재로 성폭력 사건 이용

- 성폭력은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13.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2.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 총강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와 함께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가 가부장적 사회 구조,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그릇된 성인식 등으로 인해 사적 영역의 문제로 여겨져 은폐되거나 본질이 왜곡되어 왔다. 언론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성범죄 보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언론은 성범죄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3. 언론은 성범죄를 사회적 성역할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피해자의 도덕 관념과 처신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언론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천 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언론은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개별적 성향-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탐닉, 자제할 수 없는 성욕 등-에 집중함으로써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언론은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찰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10. 언론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정보 등의 제공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적극 보도한다.

[토론3]

<언론과 영화에 비춰진 범죄> 세미나 토론문

이재성 (한겨레신문)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사형제에 국한되는 건지 범죄 일반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의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최대의 벌칙이 사형제이니 일단 두 가지 다 얘기해보는 걸로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담당 기자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얘기를 해달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사회부이고 맡고 있는 일이 사건데스크라서 범죄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어서 언론 쪽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몇가지 열쇳말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복수심

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파, 혹은 보수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좌파, 혹은 진보주의자들이 모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높은 것은 이런 사정에서 기인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원초적인 복수심이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기심이나 약육강식의 논리)에 충실한 보수 뿐 아니라, 이성을 중시하는 진보의 일부도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걸 보면 이는 분명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복수심을 논할 때 눈여겨볼만한 영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체인질링>입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는 엄마에게 경찰이 엉뚱한 아이를 데려다주며 아이를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들은 연쇄살인범에게 잡혀 있습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부패한 공권력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것인데, 제가 영화

를 보면서 주목한 점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연쇄살인범의 사형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닉슨 시절부터 공화당을 지지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주의자죠. 그는 사형집행 장면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연출합니다. 보통 영화가 숏 바이 숏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대목만 보여주는 일종의 점핑 방식인데요, 이 영화도 대체로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 장면에서는 극단적인 롱테이크로 갑니다. 사형수의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올라미를 걸고, 집행버튼을 누른 뒤 사형수의 다리가 부르르 떨리며 완전 절명상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천천히 보여주는 거죠. 마치 천하의 나쁜 놈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천천히 음미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더군요. 나쁜 놈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보수주의자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일은 이처럼 원초적인, 어찌보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이성적으로 설득해내는 작업이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놈 중에도 가장 나쁜놈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싸움이지요. 더구나 워낙 대형 이슈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라는 지속적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의제화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성수 교수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포심-호기심

대형 이슈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사퇴 압력 사건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논의할 대목 역시 조선일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나라의 어떤 언론사보다도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채동욱 사건 보도도 그런 차원이겠지만, 그런 행태가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범죄 보도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당시 한겨레신문은 유영철을 유아무개씨로 보도했습니다. 유영철이 범행을 자백하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현장 기자였던 저는 대단히 답답했습니다. 독자들은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만 해도 인권존중 보도 같은 게 화두가 될 때라 다른 몇몇 신문도 처음엔 익명을 유지했습니다. 경찰도 범인의 얼굴을 가려줬구요. 그런데 제일 처음 실명 보도를 치고 나간 게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조두순 등 거의 모든 연쇄살인범 사건에서 조선일보는 항상 가장 먼저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범죄용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경찰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얼굴 공개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주 성폭행범 보도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며 범인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의 용감한 실명 공개와 얼굴 까기 관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무모함이 최근의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보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공포심과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으로 몰고가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의구심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보며 우리가 곱씹어야 할 텍스트가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입니다. 이 영화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한 남성의 법정 투쟁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1심 판사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인권적 원칙을 중시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관료적 사법 시스템이 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 판사를 교체한 겁니다. 결국 이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주인공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다짐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독조차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결국 한 사회가 범죄(용의자)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인권의 척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가보면 그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듯이, 가장 흉악한 범인을 다루는 그 사회의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토론4]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 인권영화 제작 10년, 인권영화 10편-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기획)

<여섯 개의 시선>,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별별이야기1>, <별별이야기2>
<시선1318>, <날아라 펭귄>, <시선너머>, <범죄소년>, <어떤 시선>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프로젝트의 의미

2001년 11월 25일. 그 해의 끝을 잡고 태어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탄생의 기쁨과 성장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왔다. 인권의식이 척박한 토양에서 크고 작은 괴물들과 씨름하느라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평평해야 넓어지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영양분으로 받아먹으며 자라왔다.

인권영화 제작 첫 해, 많은 이들이 “국가기관이 나랏돈으로 홍보 영화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식의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염려는 몸에 좋은 쓴 약으로 작용했다. 인권위의 첫 영화 <여섯 개의 시선>에 참여한 박찬욱, 박광수, 임

순례, 정재은, 여균동, 박진표 감독을 필두로 매년 김태용, 정지우, 박재동, 류승완, 장진, 김동원, 정윤철, 홍기선, 방은진, 전계수, 이현승, 윤성호, 강이관, 김대승, 신동일, 윤성현 감독 등의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감독들이 한국의 켄 로치가 되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권을 이야기해왔다. ‘나랏돈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는 기쁨은 덤으로 누렸다고 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직접 영화를 만드나?

대중은 영화관, DVD, 인터넷 영화관, 모바일 서비스, 국내외 영화제, 교육적 목적의 공동체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영화를 만난다. 인권영화 기획 제작을 외주로 돌리지 않고 인권위가 직접 기획하는 이유는 영화 제작, 특히 인권영화는 주제와 내용을 ‘인권의 시선’으로 담아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다양한 작은 영화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사회 제작 기반이 허약한 탓이기도 하다.

인권영화는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권침해 요소를 흥미롭게 제기한다. 관객은 영화를 즐기면서도 어느 새 자신과 주변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거나, 우리 모두가 실상은 가해자, 피해자, 이해관계자, 옹호자의 그물코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관객들은 국가인권위 인권영화를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할 프로젝트”로 평가하기도 한다.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종교가 달라서,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병력이 있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전과(前科)가 있어서, 학력이 낮거나 높아서, 출신지역 민족 국가가 달라서 등의 이유로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를 통해 드러내려 한다.

시선 시리즈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교육용에 한해서는 인권위가 자체 제작(DVD)하여 전국에 무료 배포한다. 특히 인권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공공기관(법원, 검찰,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 국가기관 종사자)에서 인권교육 교재로 쓸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고 초중고 각급 학교, 대학도서관, 지역 도서관 등에도 배포하고 있다.

3. 인권 영화가 바라는 3P

☞ Prevention 일상에 자리 잡아 위력을 행사하는 차별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서 차별을 예방하는 기능

☞ protection 차별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학습하는 의미

☞ promotion 소극적인 예방과 보호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증진하기 위해 주체로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직접 행동’을 실현하는 의미

4. 매해 주제 선정 기준

스스로의 문제를 의제화하기 어려운 소수자에 더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시선 1318>에서는 청소년을, <날아라 펭귄>에서는 노인을, <범죄소년>에서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을, <어떤 시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면서 상업 영화가 상대적으로 다루기 꺼려했거나 배제해온 소재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 <범죄소년> 제작 과정에 대한 소개

5. 영화 외의 문화 콘텐츠

- 국가인권위 영화 기획 도서 <불편해도 괜찮아>(김두식), <별별차별>(씨네21 북스)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인권 교육교재’가 많이 부족하다. 영화보기도 일종의 훈련이라면 좋은 영화를 잘 골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도서 역시 중요한 교재로 쓰임새가 높다.

6. 인권영화가 나아갈 길

사회성 짙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소구되는 방식,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인권영화는 무엇을 해야 하나.